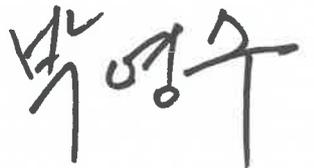


솔브레인 주식회사 인권경영정책

솔브레인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영 수

Handwritten signature of Park Young-soo in black ink, written in a cursive style.

솔브레인(주) 인권경영정책

1. 목적

솔브레인(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UN기업과 인권이행 원칙(UNGPs)을 바탕으로 국제노동규범 및 해당국가의 노동규범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인권경영정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거나 이를 방조하지 않습니다.

2. 적용범위

회사는 모든 업무수행,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되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본 인권경영정책에 따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인권경영정책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은 물론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사,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본 인권경영방침을 전세계 모든 사업장 및 계열사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3. 인권위험요소 및 운영지침

회사는 다음 각 인권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각 인권위험요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권노동 행동규범]에서 정하였습니다.

인권위험요소	운영지침
강제노동금지	회사는 노예제도·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육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미성년 근로자 보호	회사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만 15 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근로를 금지합니다.
근로시간 준수	회사는 각국 법규에 따른 근로시간 기준 과 휴무 관련 규정 을 준수하며 기준 이하의 근로 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각국 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 동일 법규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인도적 대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차별금지	회사는 모든 임직원과 지원자에게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모성보호	회사는 각국 법규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을 보호합니다.
종교적 의무활동의	회사는 근로자들이 행하는 종교활동에 대한 일체의 종교차별을 금지하

보장

노동3권의 보장

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4. 실행방안

회사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설정은 CEO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은 인사관련 부서들에서 수행합니다. 해당 부서들은 인권교육, 인권 실사,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현황 및 중요 이슈 등에 대하여는 CEO 및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합니다.

5. 인권노동 위험성평가

회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인권노동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노동 위험성평가는 HR부서에서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인권경영담당자와 근로자대표 및 임직원 대상 서베이를 통하여 인권위험요소 평가
- 평가에는 인권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 결과 위험성 확인되는 지표의 경우, 시정조치 수립 및 즉시 진행
- 시정조치(개선활동) 실시 결과 이해관계자와 공유
- 평가 결과 반영하여 회사의 인권경영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및 확장 검토

6. 고충처리 제도

회사는 인권관련 문제를 신속히 논의하고 침해시 구제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는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산하의 고충처리위원회, 사이버신문고, 사내 그룹웨어 고충 접수 채널 및 구두로 제기하는 등 접수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금지하며,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